

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검토경과

- 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- 제출일자 : 2021년 6월 4일
- 회부일자 : 2021년 6월 8일

2. 제안이유

- 「환경분쟁 조정법」 및 관련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분쟁업무 추진과 민원인들의 권익 보호 및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 수를 「환경분쟁 조정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부합하게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함.(안 제2조)
- 관계 전문가의 수행사무를 법에 맞게 정비함.(안 제4조)
- 심사관의 사무를 관련 규정과 부합하게 정비하고 심사보고서 작성 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. (안 제5조)
-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8조)

4. 검토의견

□ 적법성 여부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률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□ 주요 검토사항
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

안 제2조(구성)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수를 법 제7조제2항과 동일하게 ‘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’에서 ‘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’로 변경하고 위원의 자격요건도 법 제8조제1항에 맞게 정비함.

안 제4조(관계전문가)에서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촉된 관계 전문가의 사무를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함.

안 제5조(위원회 간사 등)에서는 심사관의 사무를 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」 제5조와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환경분쟁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.

안 제8조(수수료)에서는 「전자정부법」 제14조에 따라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□ 검토결과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률과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음.
-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, 지역 내 재개발·재건축 활성화에 따른 공사장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심사관의 사무를 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」과 부합하게 정비하여 중앙과 지방 심사관 사무의 통일을 기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.

<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적(최근 5년) >

| 구 분 | 계 | 알선 | 조정 | 재정 | 비 고 |
|------|---|----|----|----|---|
| 2016 | 1 | - | - | 1 | - 공사장 소음 피해분쟁(합의 종결) |
| 2019 | 1 | 1 | - | - | - 철도소음 피해분쟁(합의 종결) |
| 2020 | 3 | - | - | 3 | - 공사장 소음 피해(합의 종결 1) - 공사장 소음 피해(진행 중 2) |

※ 분쟁 상담의 경우 월별 10건 내외

<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(법 제5조) >

- 환경분쟁(이하 “분쟁”이라 한다)의 조정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.
 - 가. 「건축법」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(再築)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경우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
 - 나.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
 - 다.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
-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, 분석 및 상담
-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
-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, 홍보 및 지원
-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

- 아울러 위원회의 규모가 대폭 확대(9명 이내 → 20명 이내)되는 만큼 조례 개정 후 환경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위촉되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.
-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